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20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박홍배·강득구·강훈식

김남근 · 김현정 · 민병덕

박정현 • 박해철 • 송재봉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이수진 • 정진욱 • 한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및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을 "공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는"을 "상임이사는"으로, "임면한다"를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각 1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장 1명
- 2. 상임이사 3명 이내
- 3. 비상임이사 6명
- 4. 감사 1명

다만, 공무원 신분인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으로 한다. 그 외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장을"을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원) ① <u>공</u> 사에 임원으로	제12조(임원) ① 공사에는 다음
<u>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u>	<u>각 호의 임원을</u> .
<u>사 1명을</u> 둔다.	
<u><신 설></u>	<u>1. 사장 1명</u>
<u> <신 설></u>	<u>2. 상임이사 3명 이내</u>
<u><신 설></u>	<u>3. 비상임이사 6명</u>
<u><신 설></u>	<u>4. 감사 1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사는</u> 환경부장관의 승인	③ <u>상임이사는</u>
을 받아 사장이 <u>임면한다</u> .	임면
	<u>하며,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u>
	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장 및 경기도지사가 그 소속 3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노
	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
	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각 1명으로 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 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 다. <단서 신설>

제18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u>사장을</u> 포함한 이 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_
											_
											_
										τ	<u> </u>
	<u>만,</u>	공	무원	. 신	<u>]</u> 분	인	비	상	임 c	기기	<u>나</u>
	의	임기]는	コ	직	위여	케	재 '	임형	<u>하</u>	<u>=</u>
	기(<u> </u>	로 :	한디	ŀ	7 9	외	비/	상업	<u>]</u> c	<u>)</u>
	사 의	일	[기]	는 등	3년.	<u> </u>	1 6	한디	<u>}.</u>		
4]	183	조(이	사호	회)	1	(현	행.	과	같	음)
	2				<u>人</u>	사장	,	상 (] 0] ス	<u> </u>
	비선	상임	이시	를-							_
	3.	4	(현	행 ɔ	라 >	같음	-)				